

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2025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

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‘5차 경북특구(스마트 그린물류) 안착화 지원사업’ 맞춤형 기업지원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2025년 5월 15일
(재)경북테크노파크원장

1 | 사업개요

- 사업명 : 5차 경북특구(스마트 그린물류) 안착화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경상북도 5차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안착화 지원을 통한 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 혁신성장 동력 창출, 맞춤형 실증 지원을 통한 실증 안전성 확대와 성과 증대
- 지원대상 : 5차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특구 사업자 기업

2 | 모집 공고

- 공고명 : 경북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2025년 맞춤형 기업지원사업
- 지원규모 : 총 70,000,000원(프로그램 ① 20,000,000원, ② 50,000,000원)
 - ① 기업수요에 맞는 ‘특구 사업자 맞춤형 실증지원’ 을 통해 효율적인 실증 환경 구축 비용 지원(보안, 안전용품, 실증 용품, 개발품 업그레이드 등)
 - ②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 사업화 지원, 인증 및 수출입 관련 등 ‘특구 사업자 사업화 기업지원’
- 공고기간 : 2025.5.19.(월) ~ 2025.5.30.(금)
- 접수기간 : 2025.5.30.(금) 18시까지
- 사업기간 : 협약일로부터 ~ 2025.11.30.(목) 이내
- 접수처 : (재)경북테크노파크 스마트그린물류지원센터
 - 이 메 일 : ydchoi97@gbtp.or.kr
- 접수방법 : 이메일

* 세부일정은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.

- 신청자격 :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로서 특구지정지역(김천) 내에 소재하고(사업장 혹은 종된사업장 소재지 기준), 실증특례 등의 규제특례(실증특례 확인서)를 부여받은 자
 - * 규제자유특구 운영요령 제2조2항,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4항에 의거
 - * 실증 R&D 재정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프로그램 차이 있음
- 지원계획 : 참여 기업별 수요와 필요성에 따라 추가 공고 및 지원 예정
- 지원규모 : 특구사업자별 맞춤형 지원사업 총 7,000만원 이내
 - * 예산 상황 및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- *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(기업지원_경북)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특구사업자별 최대 7,000만원 이내 지원 가능(책임보험료 제외)
 - * 신청금액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비율 : 지원금(83%) + 기업부담금(17% 이상)
 - * 특구사업자의 재정지원사업비와 총괄주관기관 지원사업의 사업비 중복계상 불가
 - *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세 포함금액
- 지원방법 : 수혜기업 사업 종료 후,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, 간접 지원
 - * 예외의 인정: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(83%)에 대한 기업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공제조항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징구 해야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지원기업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 단, 평가위원회 '불성실수행' 또는 검수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업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함

3 분야별 세부 내용

① 특구사업자 맞춤형 실증지원 ※ 프로그램 2와 중복 지원가능

- 지원규모 : 2,000만원 이내
- 지원목적 : 규제 특례 실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
- 지원분야 : 실증 특례 및 규제자유특구 사업수행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분야(비품, 기기, 실증 환경 구축 등)

※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

- 지원방법 : 실증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원금을 지급

※ 사업비는 사업 최종 완료 후 용역(공급)업체로 지급 → 후지급을 원칙으로함

* 예외의 인정: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(83%)에 대한 기업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공제조항이 발행하는 보증서 등을 징구 해야하며 사업완료 후 반드시 지원기업으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 단, 평가위원회 '불성실수행' 또는 검수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업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함

※ 특구사업자 직접지원은 불가 / 특구사업자 기업부담금(현금 17% 이상) 부담

- 지원 프로그램 및 상세 내용

| 지원 분야 | 지원 대상 | 프로그램 (최대 지원금) | 상세 지원 내용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실증 지원 | 전 체 참여기업 | 맞춤형 실증지원 (최대 20,000천원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증특례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품 구입 관련 지원 ▪ 실증특례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·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 ▪ 실증특례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관련 지원 ▪ 실증특례 및 기타 사업수행 관련 비품, 기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관련 지원 * PC, 스마트폰 등의 품목은 제외 |

※ 연중 모집 및 신청을 통한 선정 합산금액은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② 특구사업자 사업화 기업지원 ※ 프로그램 1과 중복 지원가능

- 지원규모 : 5,000만원 이내
- 지원목적 : 규제 특례 실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함
- 지원분야 : 시제품/제품 사업화 지원,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, 맞춤형 교육 지원,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, 마케팅 역량 강화 지원, 안전관리 및 안전성 입증 지원 등

※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

- 지원방법 : 실증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로 지원금을 지급

※ 사업비는 사업 최종 완료 후 용역(공급)업체로 지급 → 후지급을 원칙으로함

※ 특구사업자 직접지원은 불가 / 특구사업자 기업부담금(현금 17% 이상) 부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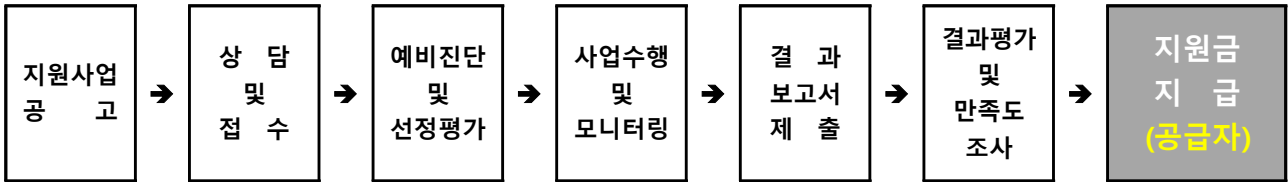
- 지원 프로그램 및 상세 내용

| 지원 분야 | 지원 대상 | 프로그램 (최대 지원금) | 상세 지원 내용(예시) |
|-------|-------------|---|---|
| 실증 지원 | 전 체 참여기업 | 시제품/제품 사업화 지원 (최대 15,000천원) | · 시제품, 디자인, 상품화 및 브랜드 개발 · CI, BI 개발지원 · 아이디어 시제품제작 지원 |
| | | 특허출원 및 등록 지원 (인증비 6,000천원) (특허 최대 1,500천원이내) | · 제품 상품화 및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한 특허 출원·등록비 지원 · 물류특구 세부 R&D 과제 사업화에 필요한 특허 출원 및 등록 비 지급 |
| | | 맞춤형 교육 지원 (최대 2,500천원) | · 교육기관 교육 훈련비, 사내 교육 시 교육 강사료 지급, 수요 요청에 대한 교육과목 개설 등 지원 |
| | | 국내 행사 참가 지원 (최대 6,000천원) | · 국내 사업관련 개최하는 행사의 부스임차료, 부대시설 임차비용 등 전시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|
| | | 국외 행사 참가 지원 (최대 20,000천원) | · 국외 사업관련 개최하는 행사의 부스임차료, 부대시설 임차비용 등 전시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|
| | | 마케팅 역량강화 지원 (최대 6,000천원) | · 마케팅 전략 수립, 시장 조사 분석 · 온오프라인 마케팅 · 제품 홍보물 제작 |
| | | 안전관리 및 안전성 입증 지원 (최대 6,000천원) | · 전문가 기술 컨설팅, 안전진단 · 자료 조사 및 자문기관 연계 |

- * 연중 모집 및 신청을 통한 선정 합산금액은 프로그램별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* 20,000천원 이내에서 중복지원 가능

4 | 지원 절차 및 일정

○ 지원 절차



- (사업공고) 2025년 5월 19일 ~ 5월 30일
- (신청방법)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→ 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
→ 참여기관 제출
- (신청서류) 6. 제출서류 참고
- (접수서류 검토) 참여기관별 적격성 검토 등 서면 평가
- (서류/발표 평가) 지원기업에 대한 평가위원회 개최
 - * 제출서류가 미흡한 경우 선정에 제외될 수 있음
- (협약) 지원프로그램별 협약
 - ※ 상황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음
- (결과제출) 협약일 이내 * 사전 제출가능함
 - ※ 결과보고서 서류(보험증서, 특허증 등), 성과 및 만족도 조사 등 제출
 - * 평가위원회 ‘불성실수행’ 또는 접수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 된 경우 소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업의 경중에 따라 이미 지급한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
- (사업비 집행) 결과평가 또는 접수 이후 15일 이내

5 | 평가 기준

○ 평가 방법

- (평가방법) 신청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
- (평가기준) 적격성 검토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수혜기업 선정
- (평가위원 구성) 산·학·연 외부전문가 5명 이내

○ 자격조건

-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구사업자(예비 포함)로서 특구 내에 소재하고, 실증 특례 등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
 - ※ 신규 특구사업자(예정)의 경우, 11월에 특구사업자 지위 확정(실증확인)

서 발급, 사업장 이전)이 되지 않으면 사업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.

○ **평가기준** : 면담/현장실태조사(필요 시) 및 선정평가를 진행하며, 선정
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수혜기업으로 선정

○ **사전제외 대상(공통운영요령 근거)**

- 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제출서류(신청서 등) 미비기업
- ③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- ④ 기업의 부도, 자본전액잠식
- ⑤ 국세·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*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⑥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*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⑦ 최근 2년 결산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%이하인 기업
 - *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.
 - *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⑧ 최근년도 결산 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 또는 부적정”

○ **유의사항**

- ① 기업부담금 (공급가액 기준 부가세 17%)이 있으며, 지원금 이외 추가비용 발생 시 신청업체 부담
- ② 현금 지원은 없으며, 신청서 접수 이후 세금계산서 접수 후 정산 지원함
-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④ 신청서 및 첨부서류 누락 사항으로 인한 향후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
- ⑤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⑥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
6 | 제출 서류

○ 제출서류 목록

| 구분 | 제출서류 | 서식 번호 | 비고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|
| 필수 제출 서류 | ① 맞춤형 기원지원 프로그램 신청 공문 | 공문 | |
| | ② 지원 신청서 | 첨부 1 | |
| | ③ 상세 사업계획서 | 첨부 2 | |
| | ④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 | 첨부 3 | |
| | ⑤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| 첨부 4 | |
| | ⑥ 기업부담금 출자 협약서 | 첨부 5 | |
| |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| | |
| | ⑧ 실증특례 확인서 | | |
| 선택 제출 서류 | ⑨ 지식재산권, 인증관련서류 : 특허, 벤처기업, 메인 비즈, 이노비즈, ISO등 | | |
| | ⑩ 공장등록증 사본 | | |
| | ⑪ 제품, 기술 홍보자료 : 제품 카탈로그, 홍보 브로셔 등 | | |

○ 참여기관 문의처 (신청서 제출 등)

| 소속 | 담당자 | 전화번호 | 이메일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경북테크노파크 | 최효혁 전임연구원 | 054-437-9538 | ydchoi97@gbtp.or.kr |
| 경북테크노파크 | 최영동 연구원 | 054-437-9542 | |

※ 접수는 e-mail 접수로 진행